

第 3 會議 討論要旨

李漢奎(司法書士) : 첫재로 司法書士의 資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 司法書士制度의 起源은 甲午改革으로 새로운 裁判制度가 導入된 以後에서 模索 되어야 할 것입니다. 甲午改革 다음 해인 西紀 1895年 3月 25日 法律 第1號로 裁判所構成法이 公布되고 이어서 同年 4月 29日에 法部令 第3號로 民刑訴訟規程이 制定되어 近代的인 裁判制度가 具體化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裁判制度에 따른 諸般 節次에 대하여 이를 잘 모르는 一般當事者의 便宜를 위하여 西紀 1897年(光武元年) 9月 4日 法部訓令으로 代書所 細則을 制定한 바 이것이 오늘의 司法書士 制度의 起源이라고 하겠습니다.

(2) 韓日合併으로 부터 朝鮮司法代書人令이 施行된 西紀 1925年 5月 1日 以前의 사이에는 裁判所構內代書의 許可를 얻어 裁判所(法院)에서 承認事項을 業務로 取扱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裁判所에서의 承認事項은 裁判所와 檢事局(檢察廳)에 提出할 書類의 作成이 그 業務로 보이나 이때의 許可 節次나 制度的 沿革은 資料의 缺乏으로 詳考하기 쉽지 않으나 그러한 節次가 重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韓日合併後에 있어 民刑事事件과 非訟事件이 激增함에 따라 裁判所와 檢事局에 提出하는 書類는 늘어나게 되어 그 書類의 거의가 代書人의 作成에 依賴하는 實情으로 一般代書人이 이에 關與함을 規制한 痕迹 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書類의 作成에는 專門的인 法律知識을 要하며 一旦 發生한 過誤와 遺脫은 後日 回復하기 어려운 損害를 當事者에게 끼치게 되므로 裁判所 構內代書人의 業務야말로 重大하므로 이에 一般代書人과 이를 確然히 區別하여 嚴格한 指導와 監督이 要請되어 비로소 司法代書人이라는 制度的인 確立을 보게 된 것입니다.

(3) 西紀 1913年 制令 第5號로, 朝鮮司法代書人令을 制定하여 翌年인 西紀 1914年 3月 16日 府令 第12號로 이를 同年 5月 1日부터 施行하였습니다. 同令은 司法代書人에 관하여 日本 司法代書人法에 의하도록 하였고 다만 同法中 司法大臣은 朝鮮總督, 地方裁判所는 地方法院, 地方裁判所長은 地方法院長, 區裁判所判事는 地方法院支廳(支院)의 判事로 한다고 規定하였으며 本令施行의 期日은 朝鮮總督이 이를 定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法律의 內容을 보면, 本法에서 司法代書人이라 함은 他人의 委囑을 받고 裁判所 및 檢事局에 提出할 書類의 作成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하고(同法第1條) 司法代書人은 地方裁判所의 所屬으로(同法第2條) 地方裁判所長의 監督을 받아야 하고(同法第3條 第1項) 地方裁

判所長은 區裁判所判事로 하여금 司法代書人에 대한 監督事務를 取扱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同法第 3 條 第 2 項). 司法代書人이 되려는 者는 所屬地方裁判所長의 認可를 받아야 하고(同法第 4 條) 事務所를 開設할 때 또한 같습니다(同法第 6 條).

(4) 西紀 1935年 4月 27日制令 第 7 號 朝鮮司法代書人令中 改正의 件으로 朝鮮司法代書人令을 朝鮮司法書士令으로 改正하고 本文中의 司法代書人을 司法書士로, 司法代書人法을 司法書士法으로 各 改正하여 從來의 司法代書人은 司法書士로 그 名稱의 改正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司法書士의 業務內容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읍니다.

(5) 西紀 1954年 4月 3日 法律 第317號로 公布施行한 司法書士法의 改正에 의하여 司法書士가 되려는 者는 法院 및 檢察廳書記 以上 滿 5年 勤務한 者 또는 그와 同等以上の 學力 經驗이 있다고 認定되는 者(司法書士法 施行規則第 1 條)로 되어 있으나 地方法院長은 大法院長의 承認을 얻어 認可한다고 司法書士法 第 6 條에 規定하고 있으므로 多少 嚴格하여졌다고 할 수 있읍니다.

(6) 西紀 1963年 4月 25日 法律第1333號 改正司法書士法에서는 司法書士試驗規定을 두었고 西紀1970年 1月 1日 法律 第2171號 改正司法書士法에서는 司法書士會와 大韓司法書士協會를 法人으로 認定하였고 西紀 1973年 2月 24日 法律 第2551號로 法院, 檢察廳主事補 7年 以上, 事務官 5年 以上, 司法書士試驗에 合格한 者(司法書士法 第 4 條)를 司法書士로 하되 大法院長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고(司法書士法 第 8 條) 그 報酬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同法第 2 條 第 3 項)고 規定하였읍니다.

(7) 西紀 1986年 5月 12日 法律第3828號 改正司法書士法에서 資格制로 되었으나 資格에 있어서 法院檢察廳 書記補 15年 以上 勤務者로 格下시킨것이 若干 資質에서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둘째로 司法書士의 業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法院 및 檢察廳에 提出하는 書類를 作成하는 것을 業으로 한다고(司法書士法 施行規則 第 2 條) 規定하고 있으나 登記申請 事件을 爲始하여 民事訴狀等에 있어서는 貸金返還請求의 訴狀등의 作成 以外에 무려 73餘種類, 民事申請 事件의 경우도 強制執行의 方法에 관한 異議申請事件等이 79種類, 非訟事件의 경우도 財團法人의 名稱 및 事務所 移轉事件等이 46種類 不動產登記 申請事件으로서 土地所有 保存 登記申請 事件等 164種類, 商業登記申請事件으로서 株式會社設立登記 申請事件等 65種類, 法人登記申請 事件에 있어서도 社團法人 設立登記申請事件等 72種類, 供託事件에 있어서도 賣買契約의 解除를 爲한 辨濟供託等 47種類, 家事審判事件으로서 離婚調停申請事件等 무려 139種類를 합하면 685種類에 達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司法書士의 業務代理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現行法 施行規則 第 2 條에 司法書士는 法院 및 檢察廳에 提出하는 書類의 作成 및 提出의 代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日本의 司法書士法 第 2 條 第 1 號에 登記 또는 供託에 관한 節次에 있어 代理를 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같은 制度下에 있는 司法書士法의 運用에 있어 日本國의 司法書士法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登記 및 供託事件에 있어서는 代理權을 付與한다 하더라도 當事者에게 有利할 뿐 實害가 없을뿐 아니라 慣例로 司法書士法이 施行된 以來 現在 代理權 때문에 問題가 惹起된 前例는 全無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로 司法書士의 報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司法書士의 報酬는 法務部令(司法書士法 第11條 第3項)으로 定한다고 規定되어 있습니다. 元來 이 報酬는 大法院規則으로 定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西紀 1973年 2月 24日 法律 第2551號로 公布한 改正 司法書士法에서 新設한 것인데 西紀1986年 5月 12日 法律 第3828號로 公布한 改正司法書士法(現行)에 法務部令으로 고친 것인데 이는 當事者가 負擔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物價政策으로서 法務部에서 管掌하되 經濟企劃院과 協議하여 策定하도록 制度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官營料金(例 鐵道料金, 郵便料金 등)의 引上率에 比하면 比較가 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一般國民 全體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不動產을 所有하고 있는 極히 一部分의 國民 即 當事者의 權利保全을 위한 것이므로 應分의 負擔을 하는 것이 原則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金1,000萬원짜리 不動產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 申請의 경우 登錄稅가 不動產 價額의 $\frac{30}{1000}$ 즉 30萬원이고 그 登錄稅額의 $\frac{20}{100}$ 이 防衛稅인 6萬원, 住宅債券金 20萬원 포함 金 56萬원이 所要되는 反面 司法書士의 報酬는 基本料金 10,000원, 價額에 대한 累進料 7,500원 合計 17,500원에 不過하여 一方 仲介人(福德房)의 仲介料는 30萬원(賣渡人과 買受人 雙方負擔)이라는 手數料 즉 報酬를 받는 마 知識水準으로 볼 때 司法書士는 高等教育(大學)을 받고 試驗(大概 100對 1 以上の 競爭率)의 合格, 法院書記로 採用 試補를 거쳐 主事職에 까지 이르러면 20年 乃至 30年間 實務經驗을 거친 法律專門家의 一員으로서 仲介人의 報酬에 比較할 수 없는 待遇를 받아야 할 것인지 이는 衡平의 原則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 司法書士制度和 같은 이웃 나라인 日本이나 自由中國(대만)의 경우의 司法書士의 報酬는 우리나라의 司法書士의 報酬의 10배 乃至 20배 程度로 規定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司法書士의 社會的인 地位를 推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의 司法書士의 報酬도 現實化되는 것이 가장 時急한 課題라고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司法書士의 登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從來에는 所管地方法院長의 認可를 받아야 하며 가령 同一地方法院 管內에서 事務所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도 事務所의 移轉의 許可를 받아야 하며 또한 다른 地方法院 管內로 事務所를 移轉하고자 할 때에는 一旦 認可 받은 地方法院에 廢業申告를 하고 事務所를 移轉하고자 하는 管轄地方法院長의 認可를 받아야 하는바 이 경우 그 地域에 定員이 없으면 認可를 받을 수 없다는 制約이 있어 뜻대로 아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西紀 1986年 5月 12日 法律 第3828號 改正司法書士法에 의하여 司法書士資格制가 實施되면서 認可制로부터 登錄制로 바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定員制가 自動的으로 廢止되고 登錄制에 따라 願하는 地域에 登錄 節次만

밖으면 開業할 수 있으므로 자유롭게 開業하고자 하는 地域으로 移轉할 수 있다는게 進一步한 制度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地方에서 開業하고 있는 司法書士가 大都市로 集中現狀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우도 있었으나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기우에 不過하였습니다. 왜냐하면 子女教育을 爲하여 이미 子女를 大都市(서울)에서 教育을 시키고 있는 司法書士들이 서울로 事務所 移轉登錄을 하고 開業한다고 하여 事件이 自己에게 依賴되어 生計가 維持된다는 保障이 없으므로 오히려 生計에 困難을 招來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既往에 開業하던 地域의 基盤을 利用, 그 地域에서의 收入으로 都市에서의 子女教育費를 充當하는 것이 賢明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大都市로의 事務所 移轉登錄이 거의 없는 狀態인 것이 事實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登錄이나 事務所 移轉(變更)登錄에는 반드시 管轄司法書士會를 經由하도록 하여 司法書士會의 地位가 向上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사법서사제도의 問題點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摘示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司法書士制度는 土地證明制度下의 代書人制度는 且置하고 光武元年(西紀 1897年) 9月 4日 法部訓令으로 代書所細則(司法書士의 前身)이 制定公布 以後 約 100年이라는 歷史와 傳統을 돌이켜 보더라도 司法書士制度는 存續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中小都市는 勿論 郡地域에서는 司法書士가 一般庶民의 唯一한 法案內者이며 指導者입니다. 이러한 司法書士制度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問題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法曹一元化 問題와 職域調整문제들 들 수 있습니다. 司法書士는 法院과 檢察廳에 提出하는 書類의 作成을 業務로 하고 있는 바 司法書士業務와 辯護士業務의 調整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商業登記는 辯護士에게 不動產登記는 司法書士에게 各 分擔한다는 것은 하나의 節次에(要式行爲) 不過한 登記로서 그러한 節次(이는 辯護士法에서 말하는 訴訟이 아님)는 當事者本人도 할 수 있는 것을 辯護士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日本國의 경우 本人訴訟에 있어서 判事는 即席에서 司法書士事務所에 가서 補充書類를 作成하여 提出하라고 할 程度로 司法書士의 職能을 認定하고 있음이 看取되고 있습니다. 또한 日本國에 있어서 辯護士가 登記事件을 取扱하지 않는 것이 不文律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司法書士制度는 앞서서도 指摘한바 있지만 거의 一世紀의 歷史와 傳統을 가지고 있는 制度이며 또한 低廉한 報酬로 능히 處理될 수 있는 登記事件을 구태여 비싼 費用을 負擔하면서 辯護士에게 委任할 어리석은 當事者는 없을 것이며 司法書士制度의 廢止라는 것은 一般國民들은 願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現代社會에서는 모든 制度가 專門化, 細分化되어가고 있는 이 時點에서 司法書士制度를 廢止하고 辯護士에로의 一元化한다는 것은 時代에 逆行하는 構想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日本國의 경우 官公署의 登記囑託 事件만을 專擔하는 公共囑託登記司法書士協會를 構成하는 規定을 法으로 定한 것도 專門化의 一環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日本國의

司法書士와 같은 官公署의 囑託登記 事件을 專擔할 司法書士團體를 構成하여 制度的으로 規定하여야 할 時點에 到達하였다고 보며 現在 서울 市內에서는 一部司法書士들 中에 있어서는 “아파트”登記事件만을 專擔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러한 點으로 보아 制度的으로 立法措置를 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더구나 歷史와 傳統이 있는 制度 즉 國民을 爲한 制度를 一朝一夕에 即興的으로 職域의 調整이라는 美名下에 司法書士制度的 廢止論者는 時代的인 錯誤를 犯할 뿐 아니라 오히려 猛省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또한 專門化, 細分化가 이미 되어 있는 制度를 統合한다고 하여 國家社會나 特히 國民에게 무슨 便利와 利點이 있을 것이냐를 考慮할 때 時代의 逆行이며 容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司法書士의 資質向上 문제입니다. 앞서서도 摘示한 바와 같이 一部 司法書士中 日政下에 資格規定이 없을 때 認可를 받은 高齡者가 若干있으나 이는 年齡的으로 보아 가까운 將來에 自然淘汰될 것이며 또한 司法書士法 第15條의 2에 司法書士는 教育을 받을 義務規定이 있어 年1回 教育을 통하여 成績이 不良한 者는 自然 廢業하게 되므로 問題될 것이 없으며 現在 法院이나 檢察廳에서 實施하고 있는 公務員採用에 있어서는 高等教育(大學)을 받은 者 中에서 熾烈한 競爭속에서 合格된 者들만이 採用되고 있으며 採用된 後에도 昇進 試驗에 合格 적어도 主事가 되어 一定期間이 經過되어야만 司法書士 資格을 인게 되므로 在職期間이 20年 乃至 30年間 經驗을 習得하게 될 뿐 아니라 司法書士의 開業을 한 後에는 一定期間 年次的으로 司法書士 研修院에서 業務遂行에 必要的인 教育을 實施하여 資質向上에 努力하고 있을 뿐 아니라 日本國이나 自由中國(대만)과 司法書士制度和 業務處理에 關한 研究會議을 相互訪問 開催하고 있는 등 資質向上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으므로 訴狀作成 따위는 自信을 가지고 當事者等의 依賴에 應하고 있으며 또한 成果를 거두어 當事者들은 滿足하고 있을 뿐 아니라 讚辭를 아끼지 않고 있는 實情이며 教育程度는 司法書士 總 2,008名中 大學出身이 半數以上인 1,012名이고 高等學校 卒業者는 607名, 그러므로 高校以上 卒業者 1,619名 즉 總數의 80% 以上이며 앞으로는 大學出身으로 充當될 것이 豫想되므로 司法書士의 資質問題는 더욱 向上될 것으로 보아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